#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04

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제4항 중 "위촉한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"로 한다.

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6조(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)

-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 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<u>위촉한다</u>.
-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⑥ (생 략) <신 설> 개 정 안

제6조(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공예문화산업진 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 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  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  - 4 -----

\_\_\_\_\_

-----

--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(5) -----

-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

	<u>산할 수 있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